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44-210012-14



교사용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CONTENTS

01

선거교육의 의의

- 1. '유권자'라는 이름 06
- 2. 선거교육의 중요성 07

02

선거교육의 기본 방향

- 1. 정치적 중립성 12
- 2. 정보의 다양성과 균형성 13
- 3. 선거 참여의 가치와 중요성 13
- 4. 선거의 공정성 14

03

선거교육의 주요 내용

- 1. 선거제도의 이해 18
- 2. 선거정보의 습득과 활용 27
- 3. 유권자의 교양 29
- 4.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 30

04

선생님이 알아야 할 선거법

- 1. 선거권 및 선거운동 연령 기준 34
- 2. 청소년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36
- 3. 선생님의 행위 및 활동 40

부록 46

- 1. 관계법조문
- 2. 선거일정표

01

선거교육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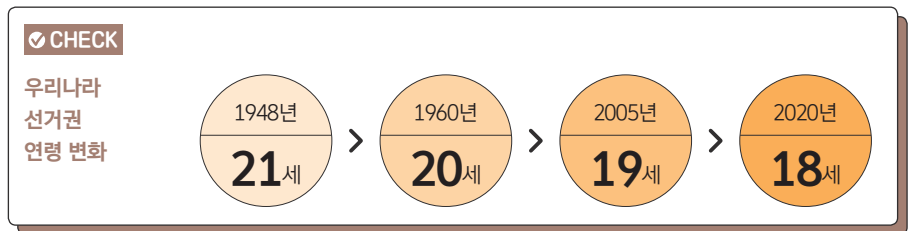
- | | |
|---------------|----|
| 1. '유권자'라는 이름 | 06 |
| 2. 선거교육의 중요성 | 07 |

1. '유권자'라는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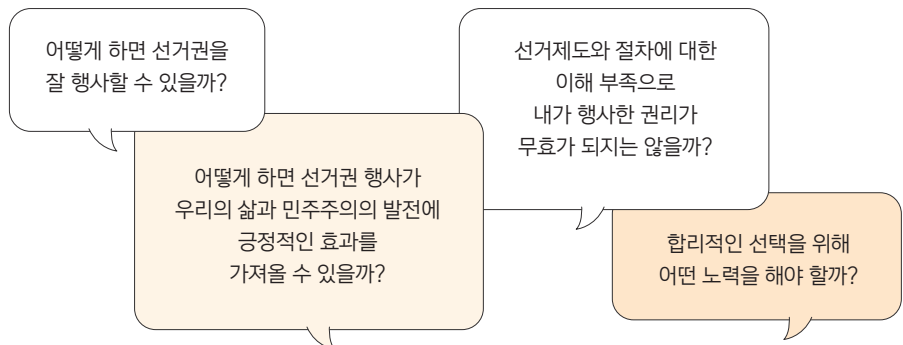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즉,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각 나라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선거권 연령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에 대한 기준이나 그 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 1. 14.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된다는 것을 단지 법적 권리를 갖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권리라는 것은 그 권리 행사의 실효성이 있을 때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는 그만큼의 책임도 따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무런 고민 없이 선택한다면 그 결과 또한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올바른 유권자는 자기 생각과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선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국가 정책을 평가하고 대표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유권자는 대표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그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자질이 부족한 대표들을 교체하거나 낮은 지지율로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권리 행사 수단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세우는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법적으로 선거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 그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때 비로소 진정한 유권자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2. 선거교육의 중요성

선거과정은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운동 - 투표 - 개표 - 당선인 결정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정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이 개입됩니다. 대표자 선출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유권자들은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념과 정책이라는 것도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없다면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투표방법을 잘 모른다면 진지하게 선택하고도 자신의 권리 행사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선거의 의미, 선거제도와 정당에 대한 이해, 사회적 이슈와 공약에 대한 관심, 유권자의 교양, 투표와 개표의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교육입니다.

청소년 대상 선거교육은 만 18세가 되어 선거권을 갖는 새내기 유권자뿐만 아니라 16, 17세 등 예비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정치적 교양을 쌓는 과정입니다.

선거교육은 특정한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는 선거운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선거교육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합리적 선택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교육은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고 자신의 생각 찾기와 당당한 권리 실현을 지향합니다. 선거교육은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함께 논하는 과정입니다. 즉, 선거교육은 유권자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교육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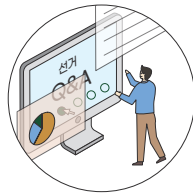
선거교육의 목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식 축적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과 자신의
생각 정립



선거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와 학습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 선택 능력 배양

그러나 새내기 유권자들과 예비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정치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는 현실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법에 따라 선거권만 갖게 된다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가 되었는데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정당이 있는지, 후보자는 어떻게 확정되는지,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또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투표하는 절차를 모른다면 당황하지 않을까요?

준비된 유권자와 준비되지 않은 유권자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로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학습,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관심, 정당과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내 가치와 생각의 정립, 권리 행사를 위한 실천 등 다양한 교양을 갖춰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선거교육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02

선거교육의 기본 방향

- | | |
|-------------------|----|
| 1. 정치적 중립성 | 12 |
| 2. 정보의 다양성과 균형성 | 13 |
| 3. 선거 참여의 가치와 중요성 | 13 |
| 4. 선거의 공정성 | 14 |

선거교육은 선거제도나 절차에 대한 학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건전한 선거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의 영역도 선거제도 일반, 선거운동 등 관련 선거법,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정치참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면한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을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교육은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교육의 기본 방향은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치적 소양을 쌓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교육적 지원을 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정당과 후보자 정보 제공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양한 정보와 정보획득 방법들을 제공하여 주체적인 선택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선거법 안내를 통해 유권자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정치적 중립성

선거교육에서 가장 유념해야 하는 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을 편향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유권자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 정답을 설정하지 않으며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에 대한 학습에서 특정 정당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제도적 효과의 정파적 유·불리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에게 선거제도와 선거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특정한 이슈나 가치, 정책에 대한 개인적 선호 또는 평가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전개합니다. 유권자 또한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가치의 주입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교육 담당자는 유권자에게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2. 정보의 다양성과 균형성

선거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선거정보를 습득하고 습득한 정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교육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택기준을 세우고 정당, 후보자, 정책, 공약에 대한 판단능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속성은 다양성입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에 있어서 특정 정보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당의 한 가지 정책을 설명하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정당의 정책도 설명해 양측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는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특정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사고의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거교육에서 정보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은 유권자가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지원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선거 참여의 가치와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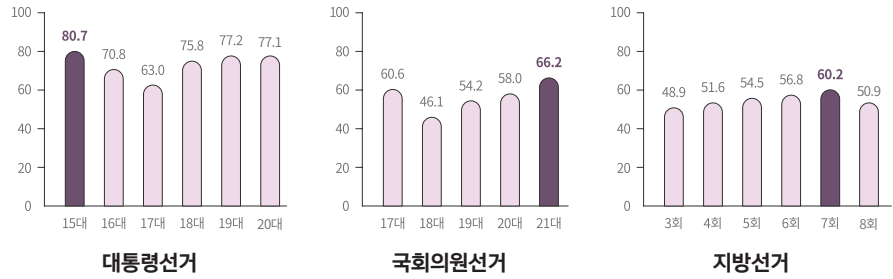
선거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국민의 생각이 집약되도록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에게 선거 참여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의 참여 없이는 선거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으며, 선거 결과 또한 유권자 선택으로 좌우됩니다. 선거과정의 공정성은 정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유권자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한 선거문화는 유권자가 중심이 될 때 정착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보일 때 선거는 정책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불법선거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유권자가 즐겁고 희망찬 선거캠페인을 펼치면 선거는 축제가 됩니다.

이것이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공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선거교육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공감하는 동기부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투표율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유권자에게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유효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보다 많은 유권자의 생각이 표출되면 대표자들의 정당성도 높아지고 국가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의 방향성도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선거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역대 선거 투표율
(단위: %)



4.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핵심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지 못한다면 대표 선출의 정당성이 침해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게 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과정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공정성은 가치의 문제이지만 선거라는 현실 속에서 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선거규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가?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 권유활동에 불법은 없는가? 선거관리 과정은 투명하고 개방적인가? 선거 결과는 정확하게 집계되는가? 모두 선거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투표하는 것만이 유권자의 유일한 역할은 아닙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유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불법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선거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거교육에서는 유권자가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선거교육의 주요 내용

- | | |
|-----------------|----|
| 1. 선거제도의 이해 | 18 |
| 2. 선거정보의 습득과 활용 | 27 |
| 3. 유권자의 교양 | 29 |
| 4.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 | 30 |

03

선거교육의 주요 내용

1. 선거제도의 이해

선거교육의 기본은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목적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고,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전반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단지 투표라는 행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일반

구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시·도의원	자치구·시·군 의원	
임기	5년	4년					
후보자 선출	정당 소속	정당별 후보 선출절차에 따름					해당 시·도의 3분의 1 이상 자치구·시·군에서 각 1,000~2,000명의 추천 (정당 추천 없음)
	무소속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500~6,000명의 추천	300~500명의 추천	해당 시·도의 3분의 1 이상 자치구·시·군에서 각 1,000~2,000명의 추천	300~500명의 추천	100~200명의 추천	
기탁금	3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 1천 500만 원 비례대표: 500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5천만 원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선거운동기간	22일	13일					
선거운동방법	선거법에서 금지한 방법 외 자유						
투표	1인 1표	1인 2표	1인 1표	1인 1표	1인 2표	1인 2표	1인 1표
개표	집중개표						
당선인 결정	단순다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 단순다수제 비례대표: 정당별 명부 순에 따라 	단순다수제	단순다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 단순다수제 비례대표: 정당별 명부 순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 단순다수제 비례대표: 정당별 명부 순에 따라 	단순다수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교육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재·보궐선거일은 4월 첫 번째 수요일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실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2027. 5. 9.) 전 70일(2027. 2. 28.)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27년 3월 3일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제8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만료일(2026. 6. 30.) 전 30일(2026. 5. 31.)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26년 6월 3일이며, 교육감선거도 같은 날 실시합니다.

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선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거과정은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확인하여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에 사용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기타 지방선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선거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

대통령선거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교육감선거 만 18세 이상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대통령선거 22일,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13일) 동안 선거공보, 선거벽보, TV토론, 공개장소 연설·대담,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며,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시점은 만 18세가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그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금요일과 토요일)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정되는 신분증(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을 지참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정확히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표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여 실시합니다. 개표과정은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합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관람증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과정을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표가 끝나면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를 집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인 결정**은 선거별로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합니다.

CHECK

감염병 환자 등 격리자의 경우 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사전투표기간중에는 둘째날인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 유권자의 경우 구체적인 투표 과정을 알지 못해 투표소에서 당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투표하여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표 절차와 올바르게 투표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은 선거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직선거별 투표용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예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예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예시)

지방선거 투표용지(예시)

1차 투표용지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2차 투표용지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CHECK

지방선거 투표 방법

-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
-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4장 교부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종전에는 교육의원선거가 있어 투표용지를 5장 받았으나, 2026. 6. 30. 후 교육의원이 폐지되어 4장 받게 됨.

CHECK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교육감선거는 투표용지나 선거벽보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특정 정당으로 착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배열식 교호(交互)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회의의원만 선출합니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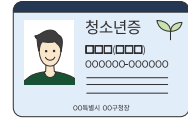
- 주민등록증, 학생증(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병적기록부, 생활기록부 등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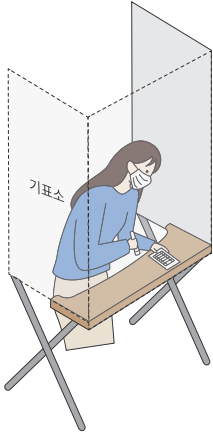
모바일 운전면허증·학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투표소 위치는 미리 확인!

내 투표소 위치를 투표안내문 (선거일 전까지 선거공보와 함께 집으로 배달)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등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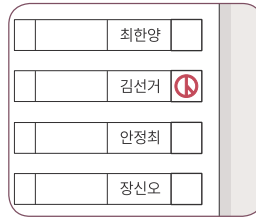
투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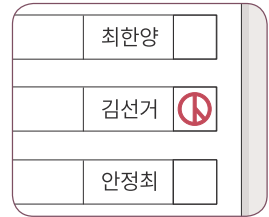
올바른 투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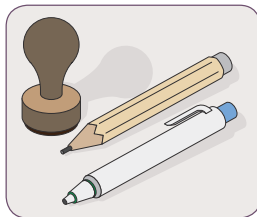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전용 도장으로 찍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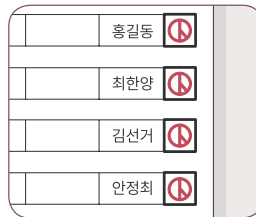
투표용지마다 투표도장을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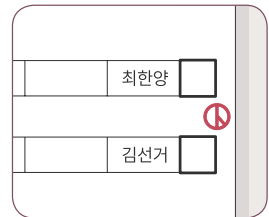
투표도장을 기표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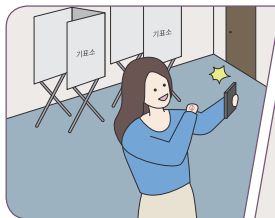
펜이나 다른 도장으로 표시하면 무효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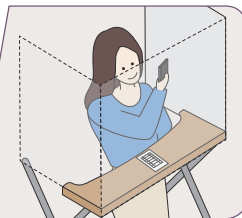
여러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도장을 어느 기표칸에도 찍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소 및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하세요)



몇 번 후보자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에서 출구조사를 할 경우에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분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비롯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의 집회에 참석해 다중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전화를 이용한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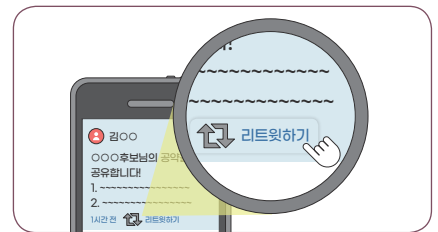
-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
-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한다.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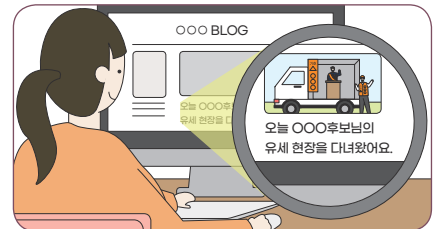
문자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에 공유하여 전달한다.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올린다.

✓ CHECK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횟수는 제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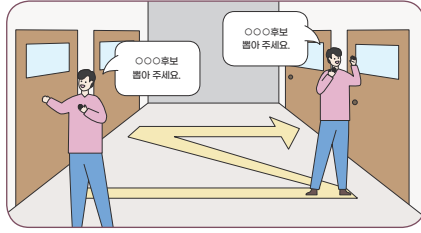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투표나 지지를 직접 부탁한다(선거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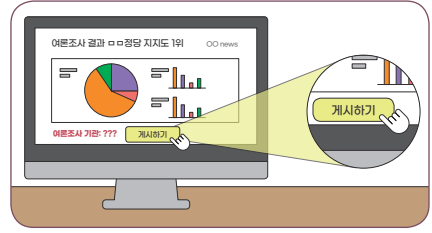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직접 부탁한다(선거일 제외).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곳 이상의 교육장소를 방문하는 행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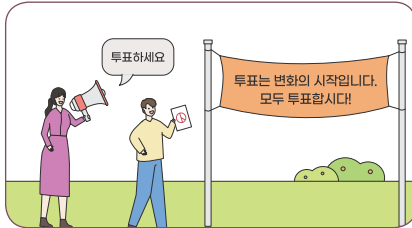


거짓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선거권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투표 참여 권유행위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방법**

할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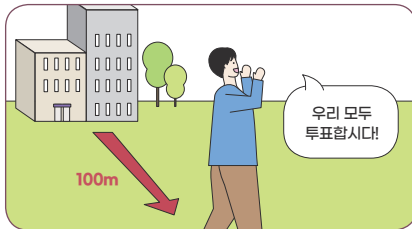


길거리에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참여 권유하기



투표소에서 투표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할 수 없는 것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 권유하기



집집마다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2. 선거정보의 습득과 활용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 자질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내기 유권자의 경우 선거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확보한 선거정보를 자신의 선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선거교육에서는 선거정보의 습득과 활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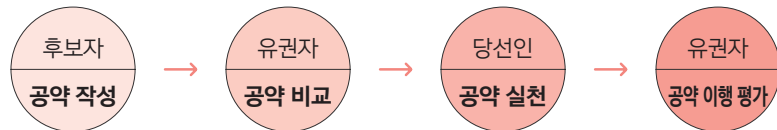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선거정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별 주요 정책이나 선거구별 주요 공약 등은 정당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사이트, 정당과 후보자들이 작성하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TV토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이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정보를 선택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도 선거정보 활용법이 될 것입니다. 선거절차나 투표방법 등은 이론학습보다 체험 학습이 더 유용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에 있는 선거체험관을 통해 미리 투표 절차 등을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CHECK

**정책·공약마당 사이트(<http://policy.nec.go.kr>)에서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비교를!**

선거가 있는 때에는 후보자공약 정보를,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인공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흐름



**사이버선거역사관 홈페이지(<http://museum.nec.go.kr>)에서
가상 선거체험을!**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 이래 대한민국 선거사를 돌아보고, 선거벽보 만들기, 투표용지 만들기, 투표소 모의체험, 개표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 정책비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별 10대 정책 찾아보기 10대 정책 우선순위 비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공약 순위 매기기 같은 공약의 차이점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 공약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기 토론 후 공약에 대한 순위 매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10대 공약 찾아보기 내가 원하는 공약 점수 매겨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정책에 대한 언론 평가 기사 읽어보기 정당·후보자의 구호(슬로건)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이 단순 반복되지 않는지 살펴보기



또한 선거기간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접속하면 후보자의 재산신고액, 학력,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유무, 입후보 경력 등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왔는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과 이력은 없는지 등을 두루두루 살펴해보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

 <p>후보자가 보유한 현금, 채권, 부동산 등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p>	 <p>후보자 본인의 국내(최종)정규 학력과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p>
 <p>후보자 본인, 배우자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및 직계존비속의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p>	 <p>후보자 본인·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최근 5년간 납부 또는 체납한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p>
 <p>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p>	 <p>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p>

3. 유권자의 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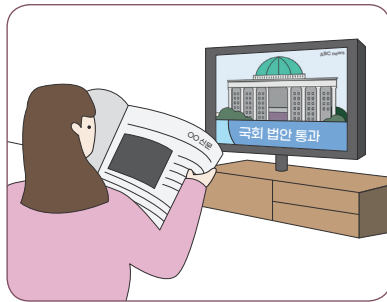
선거권을 행사할 때 소중한 권리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교육에서는 유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교양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출발점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사회문제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타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서로의 주장을 함께 논의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선거교육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와 실천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거문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습니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선거에 참여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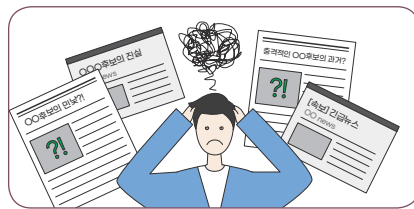
4.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

선거문화는 대표를 선출하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토양이며 그 나라의 선거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또한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선거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며, 그것이 표출되는 행동양식의 축적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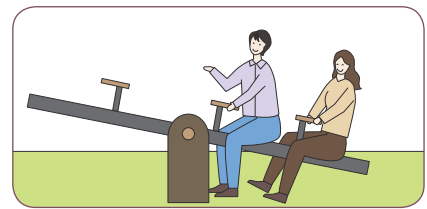
따라서 선거문화는 선거경쟁에서 선수로 참가하는 정당과 후보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유권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법으로 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 권리 행사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다수의 결정으로 모아내는 것,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현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건전하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관권선거와 같은 부정선거가 횡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선거부정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대신 시대 변화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또 다른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의 확산, 정보 왜곡, 거짓사실이나 비방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뉴미디어 활용의 부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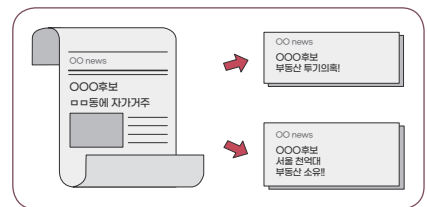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유권자가 정보를 편향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거짓사실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 CHECK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선거·정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정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 합니다.

공정한 경쟁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잘못된 정보나 거짓사실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다면 그 선거는 결코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거교육에서는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잘못된 정보의 존재와 이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하는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뉴미디어의 경우 매우 보편화되어 있고 영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활용에 더욱 특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객관적 정보와 거짓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키워나가야 합니다.

선거·정치정보 팩트 체크(fact check) 방법

- 1 출처 확인** 운영주체 파악: 언론사, 후보자, 유권자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여부
정보출처 확인: 발원자(기자, 후보자, 유권자), 논문 및 연구 출처 등
- 2 간간하게 정보 분석하기** 사실과 의견 구분해보기
처음 접하는 정보이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심하기
정보(보도)의 주제 및 의도 찾기
- 3 다른 사실 및 의견 찾기** 해당 정보(보도) 관련 다른 주장, 인터뷰, 반박보도, 통계자료, 연구결과, 팩트체크 사이트 등 검색
- 4 나의 의견 정하기** 팩트 체크 후, 해당 정보(보도)에 대한 나의 의견 결정하기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유권자입니다. 불법선거 근절 캠페인, 금권선거 퇴출운동, 거짓사실 유포 및 비방 추방 캠페인, 생산적인 온라인 토론과 댓글 문화 확산 운동, 투표 참여 권유 행위, 선거를 축제처럼 재미있게 즐기기 등 유권자 스스로가 건전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선거교육은 이러한 실천운동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이론 위주의 지겨운 학습이 아니라 성숙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뿌듯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04

선생님이 알아야 할 선거법

- | | |
|---------------------|----|
| 1. 선거권 및 선거운동 연령 기준 | 34 |
| 2. 청소년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 36 |
| 3. 선생님의 행위 및 활동 | 40 |

선거권 연령이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 1. 14.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만 18세로 낮아져 청소년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선거를 접하는 청소년들은 유권자가 되는 것이 낯설고 자신들의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무심결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선거법 적용 사례들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1. 선거권 및 선거운동 연령 기준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이 있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담토론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연령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들이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과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해 선거권 유무와 관계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당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국민(「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당·후보자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후원금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선거권 연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Q 올해 18세가 되는 청소년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럼 18세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 가입·후원금 기부

Q 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OO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A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청소년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온라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하며, 선거광고와 방송연설을 시작합니다. 또 로고송을 틀 유세차량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상시 가능-선거일 제외)

평상시 유권자는 말과 전화를 이용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육장소에서 친구를 모아놓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설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할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상시 가능-선거일 포함)

온라인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 등에 지지 영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유권자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거나 한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는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다만, 선거질서 유지를 위해 선거법에서는 유권자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등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교육장소, 친구 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권유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유형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후보자 가족 등을 비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지지한다고 해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팬클럽 형태의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동아리 활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조건이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금전 등과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으니 특히 유념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관련 사례(할 수 있는 사례)

말로 하는 선거운동

Q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 친구들에게 OO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또한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육장소에서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OO후보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

A

- 질문과 같이 선거일이 아닌 때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다만, 교육장소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Q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OO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질문과 같이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로 직접 통화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Q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이 청소년에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 보내면서 이번 선거 때 OO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A

- 질문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다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거나 한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Q 제 페이스북에 OO당이나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을 친구들 단체채팅방에 올려도 되나요?

A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선거운동 관련 사례(할 수 없는 사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Q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반복해서 물어보니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질문을 안 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친구에게는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육장소에 가는 행위

Q 평소 OO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교육장소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교육장소에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OO후보자를 뽑으라고 권유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질문과 같이 다른 교육장소를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Q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OO당의 후보자들을 위하여 OO당 후보자의 명칭·로고와 선거공약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로고와 선거공약이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

거짓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Q 전부터 OO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OO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OO후보자가 청소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하였다’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A 질문과 같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표해 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Q 친구가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A 정당,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Q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3. 선생님의 행위 및 활동

1) 수업과정에서의 행위

선생님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이나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교육과정에서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개인적인 주의나 주장을 피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활용해 교육을 하는 경우 특정 신문의 내용만을 부각해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신문사는 각각의 편집 방침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을 다룰 때 여러 관점의 기사들을 함께 설명해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특정 정당에 관한 신문기사, 특정 정당만 눈에 띄는 자료를 나눠주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선호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약을 비교할 때에는 가능한 한 많은 정당의 공약을 나란히 소개하고, 다양한 생각이나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수업과정과 무관한 행위

그 밖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영향력은 수업 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외에서도 여전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과정과 무관한 시간과 장소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과정에서의 행위 관련 사례

3) 지지도 조사 및 발표 금지

청소년들이 실제 선거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투표가 종료되기 이전에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를 물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투표의 비밀보장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 가입 및 후원회 기부 안내 금지

이 밖에도 선생님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청소년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정 후보자 공약사항 등 공유

Q 제가 가르치는 청소년 대상 공약사항을 올리는 단체채팅방에 OO후보자의 공약사항, 선거벽보, 선거공보 파일을 올리면서 다른 청소년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 또한 국(공)립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Q 선생님이 특정 청소년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라고 할 수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

-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5조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와 관련해 선거과정 및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질문과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
- 특히 국(공)립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청소년 대상 특정 정당 공약 등 언급

Q

청소년에게 “이번 선거에서 OO당의 교육공약이 좋으니 OO당을 선택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A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 또한 국(공)립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

Q

청소년에게 수업시간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OO후보자는 찍지 말라고 말씀드려라.”라고 할 수 있나요?

A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 또한 국(공)립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

Q 제 친구가 입후보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청소년들에게 “그 후보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주위 친구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A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 또한 국(공)립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 권유

Q 동아리 고문을 맡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동아리 청소년들에게 OO후보자의 강연회·출판기념회 등 행사일정·개최장소가 있는 일정표를 보내고 OO후보자의 공약이 좋은 것이 많으니 주말에 한 번 가서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A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 또한 국(공)립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정에서의 행위 관련 사례

정당 등 지지도 조사

Q 수업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할 수 있나요?

A 선생님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표한 정당·후보자 조사

Q 이번 선거일 오후 6시 전에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출구조사 명
목으로 각자 투표한 정당·후보자를 표시하라고 할 수 있나요?

A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보장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정당 가입 및 후원회 기부 안내 관련 사례

정당 가입·후원금 기부권유 등

Q 청소년들에게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하고, 특정 정당·후보자
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기부방법을 알려줘도 되나요?

A 선생님이 청소년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후원
금을 기부하라고 후원금 기부방법을 고지·안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당·후보자의 활동과 관련된 사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Q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학교 운동장에 정차하고 확장장치로 지지·호소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
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부 록

관계법조문

46

선거일정표

52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법”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장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벌칙>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256③3)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

트위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벌칙>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256③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벌칙>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255①2)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벌 칙>

제1항을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255⑤)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255③2)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255①9)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 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예비군 중 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벌 칙>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255①10)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예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벌 칙>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255①11)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벌 칙>

제1항을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255①17)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 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직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조직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정보조직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벌칙>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53)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3. 10. 13부터 '24. 5. 10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3. 1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23. 12. 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법§122 규§26의2③, 규§51①②
'23. 12. 12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④
'24. 1. 11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법§53①②
1. 11부터 4. 10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0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2. 10부터 4. 10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1부터 3. 1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1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19부터 3. 23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1부터 3. 22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7부터 4. 1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3. 27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8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29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3. 29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3. 31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2부터 4. 5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5부터 4. 6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0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2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9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주의사항

청소년 선거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자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확한 출처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콘텐츠 수정 및 편집 금지
- 상업적 목적의 이용·배포 금지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교사용